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0. 11. 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10월 24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0년 10월 25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76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2000년 11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 가. 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 보강
- 나.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를 여권과 다음에 “자치행정과” 삽입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대완)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0년 7월 4일 행정자치부장관과 2000년 7월 7일 서울특별시시장의 각 자치구청의 행정기구 보강 방침이 시달되어 우리 구도 행정관리국 산하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행정기구인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같은 조례 제5조제1항의 행정관리국의 여권과 다음에 자치행정과를 추가하고 5급 1명을 증원하여 과장으로 보임하고 6급 이하는 1명을 감축하며 직원은 동 기능전환에 따른 잔여인력으로 충원하므로 공무원은 증가하지 않으며 동 기능전환의 조기정착에 필요한 기구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7
----------	-----

제출일시 : 2000. 10. 24.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구본청 기구 보강

2. 주요골자

- 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를 여권과 다음에 “자치행정과” 삽입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동 기능전환 관련 구분청 한시기구·정원승인 (서울시 행정 13101-1952)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및 여권과를 둔다”를 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여권과 및 자치행정과를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치행정과 존속시한) 자치행정과의 존속시한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및 여권과를 둔다.	제5조(행정관리국) ①행정관리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여권과 및 자치행정과를 둔다.